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 광 서** · 이 병 문*** · 오 원 석****

I. 서 론

II.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정 필요성

III.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

IV. 결 론

I. 서 론

물품의 경제적 국적(economic nationality)을 결정하는 수단인 원산지는 WTO통일원산지제도의 협상 진행과 각국의 경쟁적인 FTA추진으로 인하여 그

* 본 연구는 송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조교수 (주저자)

*** 송실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원산지제도는 관세법시행령에 협정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64) 및 원산지 결정기준(73)을 둔 것을 시작으로 대외무역법에는 1991년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따라 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인 FTA확산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로 교역국간 원산지제도는 영 관련 문제제기와 원산지판정기준 운영상의 비합리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원산지제도에 관한 기본법이자 총괄법인 대외무역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산지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특혜원산지제도와 관련하여 WTO통일원산지제도와 관련하여 조성계(2007), 이신규(2006), 정인교 외(2005), 성윤갑(2002), 신성필(2001) 등, 원산지표시 및 판정제도와 관련하여 정재완(2008), 신한동(2007), 성윤갑(2005), 채형복(2005) 등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에는 주로 특혜원산지제도와 관련한 FTA관세특례원산지에 관련하여 성윤갑(2007), 안웅린(2007) 등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에 해당하는 대외무역법 전반에 걸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의 목적 및 여타 관련법과의 관계에서 동법의 위치 등에 관한 일반사항,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판정제도, 원산지증명·확인제도 및 발급제도, 원산지위반 및 처벌로 구분하여 종합 검토함으로써 원산지제도와 관련한 대외무역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제도자체에 대한 규범적 검토와 실무적인 접근법을 병행하였다. 다시 말하여 우선 현행 원산지제도에 관한 대외무역법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규범적 검토를 시도하도록 한다. 이는 특히 대외무역법상 여타 관련 규정과의 문제와 관세법 등 여타 관련법과의 문제 등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부 외국입법 사례 검토를 통해 접근하도록 한다. 이와 반면에 대외무역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식경제부의 원산지관련 최근 질의회신 자료를 모두 세밀히 검토하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

* 설문제목: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대상: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약 7만여개사), 설문기간: 2008.11.10~11.14

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한 국제기준 및 경쟁 상대국을 대비한 경쟁력 있는 원산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무역업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및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그 개정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II. 국제무역환경변화와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정 필요성

1.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원산지제도의 의의

오늘날 국제무역환경은 크게 WTO체제와 FTA의 확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WTO출범 이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그 확산 추세에 있다. 특히 WTO/DDA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각국은 현재 FTA 등 양자협상을 통한 실리추구를 강화하고 있다. 원산지관련 규범은 WTO 통일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FTA 등에 의한 지역적인 양자 협상을 통해 각국 별로 복잡한 원산지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결국 원산지규범의 통일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자유무역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여러 FTA의 기 체결과 협상 진행 중인 FTA를 통해 다소 복잡한 원산지 규범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각국별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원산지제도는 무역의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원산지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할 수 있다.

** 검토 대상은 원산지판정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에서 3년 8개월(2005.1.14~2008.9.11)동안 공식 처리된 155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라는 개념은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식물은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은 제도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식물 및 광물 등 1차 생산품은 원산지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공산품은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판정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 협약 등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원산지 관련 판정·표시 및 확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원산지규정은 개별법의 형태로, 그리고 FTA상 관련 국가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FTA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은 비특혜원산지와 특혜원산지규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부과, 원산지표시, 세이프가드, 차별적 수량제한 등의 무역정책 수단과 정부조달, 무역통계 작성 등에 있어서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으로 WTO통일원산지규정 및 대외무역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GATT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으로 EU, NAFTA 등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의 특혜관세제도(GSTP),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이다.

2.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정 필요성

우리나라 원산지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1년도 이전에는 관세법시행령에 협정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64) 및 원산지 결정기준('73)이 규정하였고, 대외무역법에는****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수출입금지 조항만

***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으로 ① 비특혜원산지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소비자기본법 등과 ② 특혜원산지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FTA관세특례법, 한·칠레관세특례법 등 ③ 기타법률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GATT개도국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의정서 등이 있다.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대외무역법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가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원산지표시 근거규정 마련, 원산지표시품목 등의 개정, 세관의 시중유통단속권 부여, 원산지표시 사전판정권의 관세청 위임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반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산지제도의 문제는 최근 전 세계적인 FTA확대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로 교역국간 원산지제도운영 관련 문제제기와 원산지판정기준 운영상의 비합리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판정은 주로 세번(HS 6단위기준) 변경기준에 의하는데 면사를 소매용으로 나누어 포장하여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는 반면, 특정물품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 등의 경우 그 부품을 이용하여 어떠한 제조·가공과정을 거치더라도 세번 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원산지제도는 원산지판정기준(실질적 변형)에 있어 세번 변경을 주요기준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극히 일부품목에***** 부가가치기준, 주요부품·공정기준을 도입하고 있어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동시다발적인 FTA의 추진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WTO통일원산지협상 타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원산지제도에 관한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그 개정은 대외무역법이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자 총괄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따라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도 대외무역법을 근본원칙을 근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역거래법(1967년 제정)」을 대체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제정.

***** 카메라, 소·돼지, 일부 섬유류(HS4단위기준, 42개) 등에 한정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4항.

* 대외무역법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제1조 무역에 관하여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Ⅲ.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

1. 개 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규정의 기본 틀은 원산지판정제도, 원산지확인제도 및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위반에 대한 처벌로 구성된다. 먼저 원산지 판정은 어떤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쳤을 경우, 이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원산지 확인은 수입제한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셋째, 원산지 표시는 판정된 원산지를 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인쇄, 주조, 라벨링 등)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위반에 대한 처벌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각종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행정제재 내지 벌칙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 현행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법령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현행 대외무역법 원산지 관련 법령 구성

구 분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조 항	구 성	제3장 제5절 (6개) 제5장 (7개)	제3장 제5절 (13개) 제5장 (1개), 별표(2개)	제5장 (총3절 21개) 별표 (4개)
	조 항	본문13개	본문14개, 별표2개	본문21개, 별표4개
적용범위				§ 73~74
원산지 표시		§ 33, § 42	§ 55~60, 별표2	§ 75~84, 별표8, 별표10
원산지 판정		§ 34~35	§ 61~64	§ 85~90, 별표9
원산지증명서·확인		§ 36~38	§ 65~67	§ 91~93
벌칙		§ 53~57, § 59	§ 60, § 74, 별표3	별표11

본 장은 현행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장으로 우선 일반론으로 원산지 관련 여타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 대외무역법의 지위를 검토함과 동시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의 목적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제도 및 원산지판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각

각 수입물품, 국내생산품, 수출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 원산지제도 위반 및 벌칙에 관한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개별 검토하고자 한다.

2. 원산지제도의 목적 및 대외무역법의 지위

우선 대외무역법에 원산지제도의 목적 조항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수 있고, 그 목적으로 “생산자 보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산지규범의 궁극적인 목적을 규정화함으로써 관련 규범의 충돌 내지 해석에 있어 그 기초를 다지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현행 원산지 관련 법령에는 목적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원산지제도의 목적은 ① 대외무역법의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② 관세법의 재정수입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최근에 OEM 및 해외임가공의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보호대상으로 소비자와 함께 생산자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외무역법의 첫 번째 개선방안은 동법에 원산지제도의 목적에 관한 별도 조항을 두고, 그 내용을 “대외무역법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원산지표시·판정 및 확인등과 관련한 원산지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대외무역법의 지위와 관련하여 동법은 무역관련 기본법인 것처럼 원산지규범과 관련해서도 기본법의 지위(position)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은 일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판정 및 확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그 지위에 부합하는 개관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틀은 원산지관련 법령의

** 대외무역법 § 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관세법 § 229조(원산지확인기준) ① 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체제 정비 차원에서 보다 간단명료해 질 수 있어 바람직하나,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복잡할 수 있기에 입법기술 측면에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원산지관련 규범을 하나로 통일하여 개별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개별법을 제정하면 관련 하부법령의 제정에 따른 비경제성 및 민간의 규제완화의 시대적 추세에 반하게 되므로 대외무역법에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현행 원산지관련 규정이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시행령상 별도 절(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같이 별도 장(章)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원산지표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산업보호이다. 소비자보호는 수입물품의 생산국을 기재토록 하여 소비자가 물품 구매 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지만 원산지표시제도는 품질과 상관없이 상품을 획일화시켜 소비자를 오도하게 하고, 원산지 표시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비용 상승 등의 피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 초래 및 무역장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목적에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표시대상을 꼭 필요한 품목으로 한정하고, 표시방법 등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이다.

(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개선방안

1)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축소

원산지 표시제도를 소극적 방법(원산지 허위표시만을 금지)으로 전환하거나, 표시품목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

*** 제3장 제5절 원산지의 표시등.

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소비자가 원산지를 고려하여 직접 구매하게 되는 물품, 수입물품과 경쟁되는 국내산품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 영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중고품의 원산지표시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다.**** 둘째, 외국사례***** 및 WTO통일원산지제도 등을 검토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만을 금지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셋째, 수입물품은 전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국내물품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허위표시만을 금지하는 2중제도이다.

원산지표시 관련 행정비용, 기타 소비자의 비용증가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제1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하고, 구체적인 품목은 원산지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업종별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원산지표시방법의 완화·명확화

원산지 표시방법은 최종 소비자가 수입물품 구매 시 원산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하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구매 시에 알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특히 저급품의 경우에는 구매 후 물품에 원산지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산지표시 관련 조항을 보다 단순화하고 세부사항은 관련 고시인 관세청 소관의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위임하거나, 신규고시를 제정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토록 하고,** 일본은 허위오인표시 관련한 ‘견고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

**** 정재완, “원산지표시 위반과 그 처분에 대한 연구”, 제25차 한국관세포럼 정기학술 세미나, 2008, p. 42.

***** 특히 EU의 원산지표시제도(역외생산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유는 역내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 명칭: 원산지표시·판정·확인에 관한 고시(가칭),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

** 미국 개정 관세법 제1304조.

외무역법에는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원칙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원산지 표시 면제규정의 명확화

원산지 표시 면제를 규정한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는 그 대상으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으로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하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모든 수입물품을 표시대상으로 하는 대신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물품에 대해서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 면제규정의 모호성은 지식경제부 질의회신 자료에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안전유리가 자동차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입 전량을 자동차사 신차 제조 시 조립부품용으로 공급된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여부에 대한 모호성에 따라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회신은 자동차 제조사와의 공급계약체결 등 확실한 증거자료가 구비된다면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A/S 대리점 등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2)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표시 개선방안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표시는 수입 원료·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국산 표시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수입원료(부품)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일본 관세관세기본통달 71-3-6.

**** CFR part 134.43 (표시의무의 일반적 예외)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제품, 미국으로의 선적 전에 손상 없이는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제품, 원산지표시비용이 수입을 못할 정도로 과대하여 미국으로의 선적 전에 표시가 불가능한 제품, 천연의 물질, 수입자가 자신의 용도를 위해 수입하고 수입된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판매할 목적이 없는 물품, 수입된 물품의 특성 또는 그 수입상황에 의해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아도 최종구매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인지할 수 있는 물품 등.

***** 지식경제부 질의회신자료 수출입과 2007. 12. 11일자 자료.

〈표 2〉 수입물품 유통과정상 원산지 표시의무*

수입 물품 [O]	⇒	① 국내유통·판매	⇒	수입물품[O]		
	⇒	② 단순가공: 단순제조·가공, 재포장, 다른 물품과 결합	⇒	수입물품[O]		
	⇒	③ 국내생산물품[×] (부품으로써 국내 제조·가공에 투입)	⇒	세번변경, VAT51%이상	⇒	한국산표시가능
	⇒		⇒	위 요건 불충족	⇒	한국산표시불가

* 원산지표시 의무여부 : 있음(O), 없음(×)

이러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개선방안은 우선,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규정 §86 ④항**)가 앞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규정 §76 ①항)와 중복되므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은 수입물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제76조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국내 제조업자는 해당 기준 충족 시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하고, 한국산 판정기준에 미달 시에는*** ① 우리나라를 “가공국”,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 ② 원료/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 “원료의 원산지: 국명”으로 표기, ③ 원료/부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제조원가의 재료비에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한국산 판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산 판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위반표시에 대한 처벌근거를 대외무역법에 마련해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개선방안

현행 대외무역관련 법령상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극적 방법(원산

* 지식경제부·관세청, 원산지관리제도, 2008.10, p.17

** 국내생산물품의 한국산 표시방법(규정 §86 ④호) ① “한국산”, ② “韓國産”, ③ “Made in Korea”, ④ “제조원(한국 내 주소, 회사명, 상호 등)” 중 하나를 한글·한자·영문으로 표시.

*** 규정 제86조 제5호, ㉞가공국 : 한국 (원료의 원산지 : 필리핀 55%, 한국 45%).

지 표시의무 없음)을 택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국 제도에 의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안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같이 수입물품에 폭넓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통관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를 미리 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 이와 반면에 EU와 같이 원칙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될 염려를 미리 제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생산물품의 수출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의 저하를 막고,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수입 수산물(갈치)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염, 단순절단, 물품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는 수출국인 “중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중국산 마른 김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가공 후 조미김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HS6자리가 바뀌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⑦항에 규정된 단순가공활동이라면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출할 수 없게 된다.*

4. 원산지판정제도 개선방안

(1) 수입물품 원산지판정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실질변형기준은 원칙적으로 HS6자리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을**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우회수입 우려가 큰

**** 대외무역법 제38조.

***** 지식경제부 질의회신자료 수출입과 2007. 7. 31일자 자료.

* 지식경제부 질의회신자료 수출입과 2008. 4. 23일자 자료.

** ① HS 2단위 변경기준(CC Rule: change of chapter), ② HS 4단위 변경기준(CTH Rule: change of tariff heading), ③HS 6단위 변경기준(CTSH Rule: change of tariff subheading), ④ HS 4단위 분할세번 변경기준(CTHS Rule: change of tariff heading splitted), ⑤ HS 6단위 분할세번 변경기준(CTSHS Rule: change of tariff subheading splitted).

품목 4개(카메라류, 의류 및 가죽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 완전생산기준 개선방안

완전생산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어느 영역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 부분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완전생산기준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WTO통일원산지 및 FTA원산지 규정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FTA원산지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및 해당 영역에서의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산지 판정을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외무역법도 이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세 부과징수와 관련이 없는 원산지규정의 적용은 대외무역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세번변경기준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세번변경기준(HS6단위 변경)은 간단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간단한 가공만으로 세번이 쉽게 변경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HS분류는 대부분 제조과정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분류된 것(84류, 85류)도 있고 조립에 의해 세번이 변경되는 것(기계류)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원산지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HS6단위, 4단위 등의 복합기준 품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술하면, 非특혜원산지 분야의 목적상 품목의 특성에 따라 HS6단위, 4단위 등 보다 세밀한 세번변경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 부분 통일원산지규정의 세번변경 기준을 참고할 만하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등은 기본적으로 HS 4단위이며, 일부 품목(농산물, 섬유류 등)은 HS2단위 변경제도를 택하고 있다. 또한 사전판정제도·요청·이의제기에는 비차별 원칙, 투명성원칙, 원산지판정 절차, 불소급원칙, 검토절차의 보장, 비밀보장 등 WTO통일원산지규정협정 원칙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3) 부가가치기준 개선방안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해당품목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공산품 중 전자제품이 많다. 일반적으로 HS16부(기계류, 정밀기계), 17부(차량, 항공기, 선박 등), 18부(광학기계, 정밀기계, 약기) 등은 부가가치기준이 적합하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Roll필름용 카메라(부가가치 35% 이상)만 규정하고 있다.***

입법례로서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FTA규정은 FOB 가격기준 45% 부가가치를 적용받고 있으며, 관세법 제76조 최빈국 일반특혜관세(R)(대통령령 17,489호, 2001.12.31), 세계무역기구협정(GATT)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D), UNCTAD 77개도국간 GSTP 특혜관세(G), 방콕협정(ESCAP-APTA)****, 아시아개도국 특혜관세(E) 등은 FOB 가격기준 50% 부가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되는 부가가치 계산은 원산지 및 가격의 확인이 쉬운 직접 재료비에 한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FTA규정 등을 감안하여 그 비율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도 부가가치기준을 현행보다 낮게(53.3%), 현행대로(46.7%)로 조사되었다.

4) 가공공정기준 개선방안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a)은 부가가치기준의 보완적인 기준으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중 부가가치 35% 이상을 생산한 국가가 없거나 2개국인 경우 주요 부품을 생산한 국가 또는 주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고 있다. 가공공정기준 해당품목***** 등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과는 달리 별도로 정하는 주요공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 부가가치율(%) = (FOB가격 - 비원산 원재료 가격) / 수출국 FOB가격 × 100

부가가치계산 = 당해물품의 재고생산에 투입된 특정국 생산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누계 ÷ 당해물품의 수입가격(FOB)

**** 방콕협정은 2006.7.1부터 APTA협정으로 변경되고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 45%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품목도 214품목(HS 6단위)에서 608품목으로 대폭 확대.

***** 대외무역규정 별표9 : 소(6개월이상 사육국), 돼지(2개월이상 사육국), 닭, 기타의 가축(1개월이상 사육국), 재봉하여 생산되는 의류(봉제공정 수행국), 제품형태로 편물되는 의류(편직공정 수행국), 자수제품(자수공정이 50%를 초과하면 자수공정 수행국, 그 미만시 제직공정·편직공정 수행국).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 및 관련 업종별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가공공정 해당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제도 개선방안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제도는 원료나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그 완제품을 국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품목별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후발개도국 제품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국산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향상을 꾀하고, 소비자에게 국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나 오인표시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 대상 품목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거의 모든 소비재(HS4단위 398개)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상품목 확대 및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즉,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한국산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문의가 많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 시, 공공기관 납품 시 등 국산자격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대상품목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정 §86조 2항의 “제조원가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적으로 제조원가 산정방법으로 활용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원가계산준칙」을 참고하여 제조원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하는 기업은 당해 재무제표를 그 기준으로 소명토록하고, 그 외의 기업은 연말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소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별 접근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비합리적으로 판단된다.

(3)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제도 개선방안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은 수입물품의 판정기준과 동일하나, 수입국에서 정

한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 물품의 원산지판정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 변형이 있으나 HS6단위의 변경이 안 된 경우에도 수입품만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HS6단위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무조건 단순가공활동으로 보아 국내에서 고도의 가공과정을 거쳐도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것을 허락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⑦항의 “단순가공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수출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실제 사례로** 후라이팬 기술의 핵심은 코팅기술이며, 알루미늄 제품이 부가가치 60%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단순가공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판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코팅한 경우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즉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는 기본적으로 수입국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수입국에서 문제 삼지 않는 내용을 우리나라가 문제 삼는 것은 수출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며, 수입국의 원산지제도가 우리나라 규정에 비해서 완화된 경우 해당국가 규정을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4. 원산지증명서, 확인제도 및 발급제도 개선방안

(1)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확인제도 개선방안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 원산지제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물품과는 달리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시한 지역으로부터 고시한 물품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무역법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이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그 적용이 모호하므로 제출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 지식경제부 질의회신자료 수출입과 2008. 4. 17일자 자료.

*** 대외무역법 제36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5조.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입법례로서 EU는 수입물품에 있어서 非특혜분야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나, 특정농산물,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한 섬유제품, 수입감시 조치 대상물품, 세이프가드조치 대상물품, 덤핑방지조치 대상물품, 수량제한 물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2)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확인제도 개선방안

수출물품의 경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문제는 주로 수입국 제도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원산지표시는 수입국 제도에 따르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수입국에 따른다고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으로는 업계 및 해당 기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를 활성화하고,***** 한-싱가포르FTA, 한-아세안FTA에서 채택한 자율발급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관에 의한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의 등록기관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인증수출자로 세관에 등록하여도 FTA별, 품목별로 다른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고, 물품의 추가, 변경의 경우 원산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인증수출자제도의 편리함이 없어 그 이용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특혜 및 FTA원산지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에 인증자수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대외무역법 제37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

***** 기관발급제하에서 수출자(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세관장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원산지인증 수출자의 인증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해야 한다.

* 2009년 1월 현재 23개 업체 등록.

** 2008년 특혜 및 FTA원산지증명 발급 실적

구분	상공회의소	세관	합계
특혜관세원산지증명	37,677건(99.7%)	105건(0.3%)	37,782건(100%)

(3)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동 규정이 1980년 상공부가 최초 고시하여 그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사례가 없어 전반적인 검토와 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행 대외무역법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명 § 61조 제1항)하고, 실질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 기본 원칙(규정 § 85조 제2항)이며,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규정 § 85조 제3항)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2조(공여국별 원산지기준)에도 이를 반영하여 가공공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변형기준의 기본 원칙이 되는 세번변경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진국은 원산지 자율발급이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민간이 맡을 수 있는 것은 민간발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 상공회의소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주로 서류 심사에 국한되고 있어 그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수출업자의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대하여 세관에 국한되지 않고 상공회의소에 의한 실질적 요건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상공회의소는 세관에 요청하여 현지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과 절차 측면에 있어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기에 상공회의소에 방문심사 전담직원의 지정 및 샘플링 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업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용 원산지증명서는 67개의 모든 상공회의소를 발급기관으로 하는 것을 유지하되 관세 감면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기 전담 직원 등에 의한 현지 확인이 가능한 상공회의소를 대폭 확대하여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시 그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의**** 위·변조 등의 행위에 대한 명시적

FTA원산지증명	4,715건(86.4%)	745건(13.6%)	5,460건(100%)
----------	---------------	-------------	--------------

***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38조.

금지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일부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여러 제재수단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원산지표시 대상의 물품과 원산지확인 대상의 물품이 동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지증명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준비비용으로 상공회의소 서명등록비 55,000원/년,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서 55,000원/년이며, 발급비로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5,000원/건(EDI발급은 2,500원/건),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500원/건(재발급 300원/건)이 소요된다. 발급비용은 과도한 비용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공인인증서 및 상공회의소의 서명등록비는 개별업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부담되므로 수출지원 차원에서 정책자금등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원산지제도 위반 및 처벌 개선방안

(1) 제재대상에 관한 개선방안

현행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의 원산지표시의무위반,* 수출입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구 분	제재(대외무역법 제33조)		제재(대외무역법 제42조)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제재대상
허위표시	· 3천만원이하 과징금 또	무역거래자	·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또는	무역거래자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2조, 제54조.

***** 다만, 관세법 제276조에 의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하긴 하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 대외무역법 제42조.

	는 시정조치(33조5항) ·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54조7항)	또는 판매자	시정조치(42조3항) ·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54조10항)	
오인표시	상 동	상 동	상 동	무역거래자
표시손상	상 동	상 동	상 동	무역거래자
미표시	· 3천만원이하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33조5항) ·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54조8항)	무역거래자	상동	무역거래자
부적정 표시	· 3천만원이하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33조5항)	불분명	없음	없음

그러나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의 제재대상 측면에서 이를 판매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를 상술하면 우선 부적정표시 제재대상은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대한 부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제재이므로 무역거래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미표시 제재대상은 무역거래자와 판매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산지 미표시는 무역거래자의 원산지표시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일단 현행 규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원산지표시가 되어 유통·판매 단계에서 판매자가 제거하여 미표시 상품화 된 것은 표시손상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므로 미표시 처벌대상을 판매자가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유통·판매 단계에서 미표시 위반행위의 적발 시 원 수출입업자를 찾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판매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대상 또한 판매자로 확대해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되는 제재대상은 무역거래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유통·판매 단계에서 원산지 위반행위자(원수출입업자)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판매자를 제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당해물품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산지 미표시 경우는 수입행위와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재내용에 관한 개선방안

원산지 위반의 예방차원에서 행정제재의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징금(징액 최고 3천만원)과 과태료(징액 최고 1천만원)로는 대규모 거래의 원산지표시위반에 따른 이득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적다.*** 허위, 오인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서 4~5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 사례로 볼 때 과징금(과태료)의 최고액은 징액이 아니라 물품의 가액 이상으로 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 가중하는 차등 부과방식이 바람직하다.****

부적정표시는 원산지표시위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 제54조의 벌칙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하여 반복적으로 표시방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적정표시를 법 제54조 벌칙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여타 원산지표시위반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형평성에서 타당하다. 부적정표시는 법 제42조의 불공정무역행위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고,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단속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은 통관단계와 국내유통단계로 나누어 세관, 시도지사, 무역위원회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가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병행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

*** 정재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그 처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 2008. p.17.

**** Id.

***** 원산지 관련 제재기관

구 분	세관장	시도지사	무역위(건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제33조 5항)	○	○ *	×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제42조 1항 2호)	○	×	○
과태료부과 (제59조 2항 5호)	○ **	○	×

* 국내유통 중인 물품에 국한 ** 대외무역법시행령 2008년 11월 5일 개정

선이 필요하다. 우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가 충분하고, 관세청 고시에도 구체적 사례가 상당수 열거되어 있으나, 통관상 또는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최대한 예규화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시스템 및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원산지표시 단속 민·관 협의회”에 민관이 참여한 원산지표시 단속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원산지표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여러 단속기관에 의한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유통 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유통경로가 쉽고 확실하게 파악되도록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모든 제품에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미표시 등이 자주 발생하는 관리대상 품목의 거래관계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V. 結 論

물품의 경제적 국적을 말하는 원산지는 WTO통일원산지제도의 협상 진행과 각국의 경쟁적인 FTA추진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원산지제도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은 FTA의 추진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WTO통일원산지협상 타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대외무역법 원산지규정은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판정제도, 원산지확인제도 및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위반에 대한 처벌 등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일반론으로 원산지 관련 여타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 대외무역법의 지위

* Id., p.16.

** Id., p.17.

를 검토함과 동시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의 목적 등을 거시적으로 검토하였고, 원산지표시제도 및 원산지판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각각 수입물품, 국내생산품, 수출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 원산지제도 위반 및 벌칙에 관한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대외무역법에 원산지제도의 목적 조항 신설 및 생산자 보호를 목적에 추가할 것과 대외무역법이 원산지제도의 총괄법적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원산지표시를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축소, 표시방법의 개선, 원산지 표시 면제규정의 명확화 및 국내생산물품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을 주장하였다. 셋째, 판정제도와 관련하여 완전생산기준을 WTO통일원산지제도 및 FTA원산지규정들과 조화시킬 것과 실질변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의 개선방안 및 국내생산물품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을 명확히 할 것, 원산지증명서발급제도 개선 및 발급비용 경감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원산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대상을 무역업자와 함께 판매자까지 확대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한선 조정 및 단속방식의 개선을 주문하였다.

동 연구 내용이 정부에게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됨 물론 다른 연구자에게는 원산지제도 관련 다양한 연구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2006. 10.
- 성윤갑, FTA관세특례해설, 한국무역개발원, 2007. 12.
- _____, 한국의 원산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WTO통일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건국대학교, 2002. 2.
- _____,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실증적 고찰, 박사학위청구논문, 건국대학교, 2005. 2.
- 신성필, “WTO통일원산지협상의 논의동향”, 무역구제 통권 제3호, 무역위원회, 2001. 7.
- 신한동, “상품의 원산지결정에 대한 연구 : 교토협약 및 WTO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8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7. 12.
- 안용린, “EU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7. 5.
- 유선봉, “원산지규정의 주요 이슈와 전망 : 원산지판정기준과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6. 4.
- 이신규, “WTO통일원산지협상의 논의동향과 전망”, 관세학회지 제7권 1호, 한국관세학회, 2006.
- 정인교 외 3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정재완,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2008. 8.
- _____,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그 처분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 2008.
- _____, “원산지표시 위반과 그 처분에 대한 연구”, 제25차 한국관세포럼 정기학술 세미나, 2008.
- 조성제, “WTO통일원산지규정 협상동향과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10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7. 3.
- 지식경제부·관세청, 원산지관리제도, 지식경제부·관세청, 2008. 10.
- 채형복, “한국산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법적쟁점”, 관세학회지

제6권 제2호, 2005.

한국무역협회, WTO원산지규정해설, 한국무역협회, 2002.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 Consolidated Text of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 *Communication from Korea*, World Trade Organization, G/RO/W/115(18 March 2008)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 Draft - Consolidated Text of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World Trade Organization, G/RO/W/111/Rev.2(23 May 2008)

Edwin Vermulst,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MINUTES OF THE MEETING OF 24 APRIL 2008, World Trade Organization, G/RO/M/50, 29 May 2008.

[웹사이트]

www.customs.go.kr(관세청)

www.e-shokuiku.com/kikaku/10_1_1.html

www.foodlabel.go.kr/01_intro/intro01_food.asp

www.kita.net(한국무역협회)

www.maff.go.jp/j/jas/jas_gaiyou.html

www.mke.go.kr(지식경제부)

www.wcoomd.org

www.wto.org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ules of Origin in the Korea Foreign Trade Act in the Global Trade Circumstances

Park, Kwang So
Lee, Byung Mun
Oh, Won Suk

It is a right time to improve the Korea Foreign Trade Act(KFTA) as a fundamental law on Rules of Origin(RoO) in the global trade circumstances which are summarized FTA and WTO. The KFTA's RoO constitutes the labelling system of the Country of Origin, the criterion of it, the issuing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the punishing offender mainly around the importing good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problems of KFTA's RoO at the macro and practical level, and proposed the programs to improve the KFTA's RoO about importing, exporting and domestic production goods.

KFTA need to create a purpose clause to protect consumers and industries also, and has to be located a general and top position in the RoO of Korea. In the concrete, the labelling system of the Country of Origin has to set limited in the point of minimum necessity view. The criterion of the Country of Origin also has to improve the wholly obtained criterion, the changing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value added criterion and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to harmonize WTO Rules of Origin and FTA Rules of Origin. The punishment ceiling against offender has to raise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RoO.

Key Words : Rules of Origin, RoO, Non-Preferential RoO, Korea's RoO Regimes, Korea Foreign Trade Act
